

준비 서면

신청인(선정당사자) 김 기 창(金基昌)
서울 성북구 안암 5가 xxxxx (keechang@fastmail.fm)

피신청인 사단법인 금융결제원
(우)135-758,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7

사건 번호 **2007머978** 손해배상(기)

재판부 민사92단독(조정)

2007.3.7. 11:00 로 예정된 조정기일에서 신청인들은 다음 조항에 의거하여 변론할 예정입니다. 변론 소요 시간은 약 20분 가량으로 예상하오니, 적절히 판단하여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:

- 전자서명법(“법”) 제7조 제1항, 제2항: 피신청인의 보편적 역무제공 의무
- 법 제22조의2 제2항: 가입자 소프트웨어 제공 의무
- 전자서명 인증업무 지침(“지침”), 제5장 제24조 제1항, 제4항(제1호), 제5항: 가입자 소프트웨어의 요건, 형상관리, 무결성 확보 의무
- 지침 제5장 제28조: 등록대행기관을 관리할 의무
- 민법 제391조: 이행보조자의 고의, 과실

지침은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합니다: http://www.rootca.or.kr/kisa/kcac/jsp/kcac_9040.jsp

2007.2.20.

신청인(선정당사자) 김 기 창

서울 중앙 지방법원 귀중